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3호 2011. 3. 9(수)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484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사천시 규칙 제485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사천시 규칙 제486호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일부개정규칙	20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43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1-2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25
○ 사천시 고시 제201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27
○ 사천시 고시 제2011-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변경사항 승인 ...	3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1-15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3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48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되었을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를 “된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이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3)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1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4)

제23조제4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6)

사천시 규칙 제48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 전에”를 “10일 전에”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를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하고,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거나”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7)

제24조의2(법인명부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증명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4조에 의거”를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별도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은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8)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유						
영 치 기관						
영 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9)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사 천 시 장

사 천 시 영 본

제273호(10)

	범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p>(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 서면 조사서</p>	<p>○ 범 인 명 : (인)</p> <p>○ 대 표 자 :</p> <p>○ 범인소재지 :</p> <p>○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p> <p>○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p> <p style="padding-left: 20px;">(전 화) (팩스)</p> <p>○ 제출일자 : 년 월 일</p>	<p>제조업 ()</p> <p>건설업 ()</p> <p>판매업 ()</p> <p>문송업 ()</p> <p>기 타 ()</p>
<p>사 천 시 장 귀하</p>		

사 천 시 영 민

제273호(11)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사천시 전체본은 작성 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 문의사항 전화 : (055) 831-2865

사 전 시 행 본

제273호(1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 천 시 공 본

제273호(13)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 천 시 공 본

제273호(14)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도 시· 면· 리	번 지 호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근로	퇴직	배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②산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사 천 시 능 본

제273호(16)

※ 서식 2 재신분 주민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사업장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월별														
① 급여														
상여														
② 소계														
③ 연장차량														
④ 소계														
⑤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⑥=(①-②)														
급여지급일														
⑦산출세액														
⑧×(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지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7]

각 전 시 안 본

제273호(18)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시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
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0)

사천시 규칙 제48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을 “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67조제1항제2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2항제2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당해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10만원 이하 25퍼센트
2. 10만원 초과 20퍼센트
3. 50만원 초과 15퍼센트
4. 100만원 초과 10퍼센트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1)

제5조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43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케 한다.”를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케 한다.(단, 성실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의 경고는 2일간 출근 정지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로 한다.

제55조제2항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를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단, 성실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의 견책은 1주일간 출근 정지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중과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3)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2. 청원경찰의 정수

부서별	합계	경 비			감 시 단 속						
		소 계	청 경 사 비	시 설 물 비	소 계	하 천 감 단 속	도 로 교 감	산 람 시	주 차 단 속	재 해 방 예	광 고 물 속
총 계	30	18	2	16	12	2	2	3	1	3	1
본 청	소 계	26	14	2	12	2	2	3	1	3	1
	총 무 과	2	2	2							
	사회복지과	1	1		1						
	문화관광과	3	3		3						
	체육지원과	8	8		8						
	건 축 과	1				1					1
	건 설 과	2				2	2				
	재난관리과	3				3					3
	도로교통과	3				3		2		1	
	녹지공원과	3				3			3		
사 업 소	소 계	4	4		4						
	환경사업소	1	1		1						
	하수사업소	3	3		3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4)

[별표 5]

징 계 양 정 기 준(제65조 관련)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 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도가 경하고 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 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나. 기 타	해고	정직	감봉	경고
2. 복종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 직 의무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9. 음주운전 사건				
가. 면허정지(최초)			경고	
나. 면허취소(최초)			견책	
다. 면허정지(2회)			견책	
라. 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감봉-정직	
마.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취소(2회 이상)			감봉-정직	
바.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해고	
사.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 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해고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면허정지이상) 이상을 의미함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1-20호

공유수면 점용좌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좌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1. 점용좌용 승인번호 : 제2011 - 1호
2. 점용좌용 승인년월일 : 2011년 2월 22일
3. 점용좌용의 목적
 - 삼천포대교공원 내 공유수면에 수상무대(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친수공간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함.
4. 점용좌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5. 점용좌용의 면적 : 727㎡(44m × 17m)
6. 점용좌용의 기간 : 2011년 2월 22일 ~ 2026년 2월 21일
7. 점용좌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좌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6)

승 인 조 건

1. 본 사업은 삼천포 대교공원내 상기 위치의 공유수면에 수상무대(테크 플랫폼)를 설치하여 친수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설치공사 시, 발생한 부유물 등에 의해 주변의 마을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동 시설물 운영 시,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변 해역의 쓰레기(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어업인(이해당사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미지정(해면)된 공유수면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나,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민원소지를 없애야 하며, 처분기관은 협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 개발로 인근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9. 허가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0.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27)

사천시 고시 제 201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시도	후전~중항 (6호선)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641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576	0.582	곤양면 검정리	검정~중항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1. 3.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055-831-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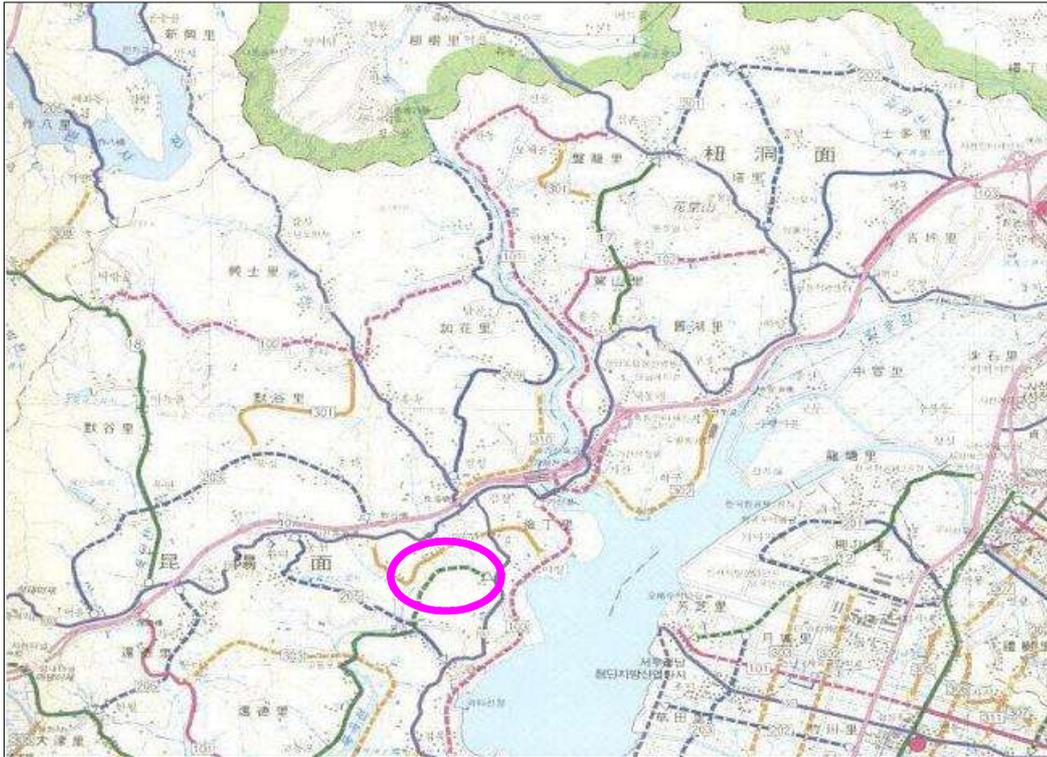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별첨)

첨부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사천 시 공보

제273호(28)

위 치 도



사 전 시 앙 본

제273호(2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소유권미외의 권리명세	소유권 소유자	소유권 소유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 고
		지번	지목	대상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김정리	641	구	2,677.0	641	구	608.0		국(농림부)			
2	"	626-1	도	398.0	626-1	도	239.0		사천시			
3	"	625-6	도	105.0	625-6	도	105.0		사천시			
4	"	624-1	천	234.0	624-1	천	140.0		경상남도			
5	"	622	잡	671.0	622	잡	114.0		국(건설교통부)			
6	"	산55-7	천	66.0	산55-7	천	66.0		경상남도			
7	"	651	제	1,134.0	651	제	17.0		국(건설부)			
8	"	산56-14	천	1,628.0	산56-14	천	1,628.0		사천시			
9	"	621	천	1,025.0	621	천	351.0		국(건설교통부)			
10	"	664-1	천	1,995.2	664-1	천	10.0		국(농림부)			
11	"	640	천	24,254.0	640	천	1,946.0		국(건설부)			
12	"	664-2	구	297.2	664-2	구	297.2		국(농림부)			
13	"	662	도	6,743.7	662	도	1,096.0		국(농림부)			
14	"	산56-15	도	57.0	산56-15	도	57.0		사천시			
15	"	산56-13	도	1,118.0	산56-13	도	562.0		사천시			
16	"	660-1	답	996.8	660-5	답	307.1	이월군	김정리 514			
17	"	574-1	답	1,917.0	574-4	답	172.0	이월군	김정리 514			
18	"	573-1	답	1,499.0	573-4	답	107.0	이월군	김정리 514			

사 전 시 영 본

제273호(30)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번	지목	대장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소유자	주소	소유권		
19	"	572-1	답	1,498.0	572-5	답	81.0	박성제	사천 정동면 고읍리 465-2 HK 영가H101-704					
20	"	663	구	1,678.6	663	구	279.0		국(농림부)					
21	"	575-1	답	1,914.0	575-7	답	13.0	신학철	검정리 347-1	공명농업 협동조합	공명면 봉계리 866	근저당권 설정		
22	"	569-1	답	1,267.0	569-7	답	37.0	신상임	진주시양정동253한보아파트 105-1204					
								신상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아파트 5-508					
								신환임	창원시경산구대방동395 정원3차아파트305-1203					
								신경임	진주시양정동253한보아파트 103-1104					
23	"	576	답	1,886.0	576-2	답	23.0	신상열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7 장미아파트5-205					
24	"	660-2	답	3,102.5	660-6	답	41.6	이경열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가 59					
25	"	660-3	답	3,063.3	660-7	답	125.1	박신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주공1 차아파트 103동 1003호					
								김경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주공1 차아파트 103동 1003호					
26	"	660-4	답	694.7	660-8	답	40.3	박신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주공1 차아파트 103동 1003호					
								김경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주공1 차아파트 103동 1003호					
27	"	625-1	답	768.0	625-11	답	208.0	최학식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82					
합계				59,274			7,589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31)

사천시 고시 제2011-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변경허가번호 : 제2010 - 10호
2. 점용~~사용~~ 변경허가 년월일 : 2010. 12. 17.
3. 점용~~사용~~의 목적
 - 조선업체 생산 물동량 양~~회~~륙을 위한 물양장 축조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9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943㎡
6.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사항
 - 당 초
 - 공사내용 : 잔교식 물양장 [943㎡ (L=46.3m, B=12~32m)]
7.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장 최학림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34번지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32)

8. 점용·착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 점용·착용 허가(변경)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물량장 설치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인접 도시계획시설(대로3-6호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동 물량장 조성사업은 보조금지원 사업으로서 보조사업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시(공단 조성과)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73호(33)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1-15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사 천 시 장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 허 번 호	패류양식 사천 제 15 호	
면 허 면 적	10.00 ha	
어 업 의 종 류	패류양식	
어 업 의 방 법	살포식	
어 장 의 위 치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지선	
포획·채취·양식물	파래외 기타	
어 업 의 시 기	주 년	
면 허 기 간	2001. 4. 14 ~ 2011. 4. 13.	
연 장 허 가 기 간	2011. 4. 14 ~ 2021. 4. 13.	
허가일자 및 번호	2011. 3. 3. 제2011-1호	
어업권자	주 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성 명	다맥어촌계